

세계가 주시한 IT 관련 판결

판결 결과 따라 유사 소송 판례화 '관련업계 관심 집중'

지난해와 올해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굵직한 소송들이 있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에 관한 판결과 냅스터 등의 판결이 있었다. 이런 판결의 결과는 바로 비슷한 소송들의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것이다. 이에 위에 제시한 사건과 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간의 분쟁 등을 염두 판결의 진행과정과 의미에 대해 짚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쿠리다 쇼헤이



2001년 2월에 세계가 주목해 온 3가지 IT 관련 소송이 새롭게 전개되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이하 썬)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Java 언어 저작권 침해 의의 계정', '미국 레코딩산업협회가 냅스터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의의 계정', '사법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독점 침해 의의 공소심' 등 세 가지이다. 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썬에 화해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법정 밖에서 화해했다. 냅스터 소송건은 동 회사가 저작권이 붙은 곡들을 소비자들이 부정 취득하도록 방조한다는 유죄판정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소재(머티리얼)의 정의가 애매모호 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으며, 그 후에 시장 진출한 Gnutella사 등 다른 분산 파일 공유 시스템의 벤더에 존재 논거를 준 결과가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독점법 소송은 고등법원의 구두변론에서 담당 판사들의 삼엄한 질문과 논조 분위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견해가 전문가들 사이에 퍼져가고 있다. 아래는 위 세 가지 사건의 공소 후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I 마이크로소프트

썬에 2,000만 달러 지불 법정외 화해

우썬 썬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Java 언어 저작권침해 의

소송 3가지

의 제소인데, 썬의 제소는 다음과 같은 경위에서였다.

창업이래 기업이념이 된 'The Network Is The Compute'를 실현하는 강력하고 유연한 언어로서 썬이 컴퓨터나 하드웨어에 관계 없이 작동하는 Java 언어를 약 6년 전에 발표하였다. 이후 Java 기술은 파죽지세로 보급되었다.

여기에서 '자바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데스크톱 PC의 OS인 Windows에 의한 시장 독점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Java를 Windows에 의존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제품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사는 1996년에 Java 테크놀로지 호환 소프트웨어만을 유저에게 제공한다는 협약으로부터 Java 테크놀로지 라이센스를 얻었다. 그런데 마이크로사가 이 약속을 깨고 썬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Windows 상에서만 이동하게 Java 비호환 코드를 기술해서 넘겨주기 시작했다. 이에 썬은 재삼 재사의 Java 테크놀로지 비호환 소프트웨어의 출하를 금지하도록 요청했는데, 마이크로사는 귀담아 듣질 않았다. '썬은 Java 테크놀로지 라이센스 및 배포 계약을 해지했다'는 것이 썬과 보도자료 요지이다. 썬은 1997년 10월에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그 후 3년 동안 계속된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 양사는 2001년 1월 23일, 로널드 M. 화이트 판사 입회 하에 다음의 2개항을 조건으로 법정외 화해를 했다.

당 법정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Java 호환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한다. 이에 앞서 당 법정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Java 테크놀로지의 비호환 코드를 배포해 온 사실을 인정하며 이를 비호환 제품에 Java 호환 소프트웨어 마크를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령을 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Java 테크놀로지 코드 기술에 이미 투자한 개발자와 소비자를 불잡기 위해서 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Java 테크놀로지의 구형화한 버전 1.1.4에 대하여 현행 코드 기술을 계속 출

하하기 위하여 한정적인 라이센스를 주었다. 이를 제품은 당 소송에 있어서 썬에게 보증을 받고 금지명령에 따라 이미 수정되었다. 사용 허락은 기존 Java 테크놀로지를 내포하고 있는 제품에만 한정되었으며 그 사용기간은 7년으로 정해졌다.

'그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Java 테크놀로지를 배포하는 권리를 잃고, 만약 배포하려 할 경우에는 썬의 지적 재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썬의 Java 테크놀로지는 모든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 통일된 요소로서 계속 성장한다'라고 썬은 강조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합의의 일환으로 썬에 2001년 1월 25일 까지 2,000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우리 회사의 라이센서(사용허락자)들과 소비자들의 승리입니다. 즉 이 커뮤니티는 하나의 Java 테크놀로지, 하나의 브랜드,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의 위대한 플랫폼을 바라마지 않는데 우리 회사가 그것을 이루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합의는 썬의 Java 테크놀로지의 확실성과 가치를 보호할 것입니다'라고 썬의 맥클리 CEO 겸 회장은 말했다. 지금 Java 테크놀로지 라이센스를 얻은 기업은 200개 사로 250만 명의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러한 법정외 화해를 발표하고 나서, 겨우 이를 후 화해의 영향의 극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Jump'를 발표했다. Jump는 Java User Migration Path의 약자로 Java로 쓴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Net(닷넷)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호환 폼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Net 전략은 소프트웨어 제품을 'Web 서비스'라고 불리는 환경으로 바꾸어 가는 전략이다. Jump는 Java에서 쓰여진 기존의 많은 프로그램을 Net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게 하는 '트랜지스터'를 포함한다.

한편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Java와 경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C#(C 셔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Jump 출하는 2001년 후반에나 볼 수 있어 썬은 이것을 '방위전략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썬은 2월에 Net 전략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ONE(Open Net Environment) 전략을 발표했다. 2002년에 기존 제품의 외측에서 ONE 산하의 다수 소프트웨어 제품을 발표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월 5일에 Windows와 Office의 차기 제품을 WindowsXP 및 OfficeXP라 이름하여 발표했다. ONE 전략은 마이크로소프트의 Net 전략에 대항하는 것과 동시에 기업이 자사에 설치하고 있는 컴퓨터에 IBM이나 오라클이나 HP의 E-커머스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도입할 경우 ONE 산하의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입하는 전략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고등법원, 냅스터 사업은 소비자의 저작권침해 방조하고 판결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이 해적곡의 교환 중개 사업을 금지한다고 명령

미국의 제 9 순회 고등법원(재 샌프란시스코)은 2월 12일, 미국 레코딩산업협회(RIAA =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대 냅스터(Napster) 소송에서 '냅스터는 소비자의 해적 행위(저작권 불은 음악의 부정취득)을 방조하고 있다'라는 RIAA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법정은 냅스터가 합법적인 곡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합법적인 곡에 대해서는 교환 배포 서비스해도 좋지만 해적행위에 근거한 곡들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판정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구 연방 지방법원은 3월 6일에 냅스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곡은 서비스를 정지시킴으로써 음악의 무료 배포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가처분은 냅스터 서비스의 전면 정지를 원하는 레코딩 산업의 요구

에 따르지 않고 저작권 침해가 명확한 곡으로 한정시켜 내린 명령이다.

냅스터(CEO는 행크 배리 'Hank Barry')는 션 패닝(Shawn Fanning)이라는 대학생이 개발한 피아 투 피아로 음악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를 기업화하려고 했다. 1999년 5월, 개발자 패닝 자신도 창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다. 현재, 동 회사의 서비스로 혜택을 받고 있는 회원등록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6,500만명에 달하는데, 서비스 내용은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PC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음악의 디지털 복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냅스터에 축적되어 있는 음악을 해당 디렉토리에 등록시켜 소비자의 PC와 PC를 연결해서 해당곡목(1곡이라도 복수의 곡이라도 좋다)을 전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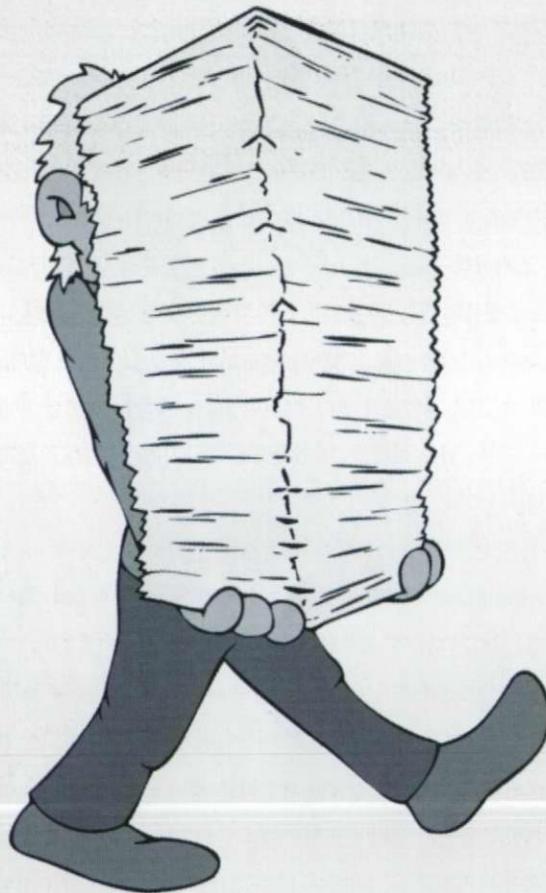
레코드회사, 3월 19일 당시 13만 5000곡 이상의 저작권 불은 노래 리스트 작성

이번 판정으로 냅스터는 서비스를 유료화 한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법원에서 부정 취득 음악에 대한 중개 정지 명령이 나오기 전, 2월 21일에 냅스터는 레코드 회사와 앞으로 5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지불한다는 회해안을 제안했다.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악 파일이 한 소비자로부터 다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냅스터의 센트럴 서버에서 해당 수취인이 요금 지불을 마쳤는지를 체크하고 유효화 되면 해당 수취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곡목을 포터블 뮤직 플레이어로 전송하거나, CD로 인화할 수 없게 스크램블링을 걸어서 발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게다가 거래의 역추적은 냅스터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냅스터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는

- ① 무료 트라이얼 멤버쉽
- ② 어떤 일정 수의 곡을 월정액 5달러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베이직 멤버쉽
- ③ 월정액 6~10달러를 지불하고 무제한 수의 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풀 멤버쉽의 세종류이다.

동 회사가 등록자를 조사한 결과 70%가 유료화 회원임을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냅스터는 실제로 사인하는 소비자는 5%라고 가정한다. 그래도 수입은 꽤 크다. 앞서 말한 것처럼 냅스터는 매년 2억 달러를 레코드업계에 지불한다는 잠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 2억달러 중 1억5000만 달러를 빅 파이브(Vivendi Universal, AOL+Time Warner(합병하기 때문에 1개 회사로 본다), BMG, EMI, Sony) 회사에, 나머지 5,000만 달러는 중소 독립계 레



코드 회사와 저작권 보유자인 아티스트들에게 나누어주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빅 파이브는 불만을 나타내며 아직까지 어떤 회사도 사인하고 있지 않다.

냅스터는 레코드 회사에 저작권 붙은 곡목 리스트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레코드 회사는 동 리스트의 편집에 따라 3월 19일, 13만 5000곡의 음악 타이틀을 제시했다.

이번 고등 법원의 판결은 저작권에 관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국경 없는 무제한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게 될지 모르는 인터넷상의 지적 재산권의 확보'에 하나의 제어 장치를 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정 대상이 되는 머티어리얼에 대한 애매모호한 정의와 단순히 부정 취득 행위의 금지하는 명령만으로는 냅스터의 성공을 보고 진출한 Gnutella나 다른 분산 파일 공유 교환 시스템의 밴더들에 대한 일타는 되지 않아 '분산 파일 교환 시스템을 옹호할 수 있는 합리성을 부설했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III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사법부 대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금지법 공소심

1999년 11월 5일, 미국 콜럼비아 특별지구 연방 지방법원의 토마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독점의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 인정서를 공표, 2000년 4월에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동 회사를 OS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개별 기업으로 이분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 즉시 마이크로소프트는 동 지구 고등법원에 공소하였으며, 이에 대항해 사법부는 중요산업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의 심리를 건너뛰고 최고 법원의 심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Expedite Act를 적용해서 잭슨판사의 동의 하에 6월 법적인 수속을 취했다.

이에 대해 최고법원은 고등법원이 심리를 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콜롬비아 특별 지구 순회 고등법원에서 심리에 들어갔다.

(본지 3월호 판결문 참조)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은 2001년 2월 26일부터 이를간 구두 변론으로 시작되었는데, 재판 첫날 판사들의 변론에 대한 기사는 기자에 따라서 차이가 났다.

즉,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는 '지방법원의 잭슨 판사가 낸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할 명령을 맹렬히 공격해, 동 명령은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많은 판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할 한

다해도 OS시장에서의 독점이 계속된다면 잭슨의 논리가 박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독점을 기도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사실 인정에 의문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한편 뉴욕 타임즈 기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든 사실을 제시할만한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재판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서 사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충분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 78일간의 심리기간에 79명이 증언했다고 논고했다. 한나절을 소비한 심리는 판사들의 생각을 통찰할 수는 있었지만 고등법원의 재정 행방을 예고할 수는 없었다. 고등법원은 조기에 판결을 내리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냉철하게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처럼 보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의 사정을 배경으로 한다. 즉, 1980년에 카터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해리 T 에드워드 판사가 이번 재판장을 맡고 있는데, 그는 사법성의 제소에 대해서 공명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잭슨에 의한 재판에는 매우 비판적이다.

이번 심리에 참가하는 7명의 고등법원 판사 중 4명이 공화당파인데, 윌리엄 코바싱크 교수를 시작으로 잭슨에 비판적인 독점금지법 학자가 '그를 포함해 5대 2의 평결로 잭슨의 판결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다' (코바싱크)고 예상하고 있다.

어쨌든 미국의 19개 주가 사법부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해, 각 주의 사법장관이 변함없이 동 회사 규탄의 태도를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부시 대통령에 의한 공화당 정권의 실현 후 향방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우선 1월 12일, 연방 지방법원의 J 프레더릭 모츠(Frederick Mots) 판사가 20건의 소비자 집단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다.

결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제소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리고 1월 23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썬과의 싸움이 결말이 났다. 비즈니스 워크에 의하면 19개 주의 사법장관들의 자세가 모두 뻣뻣한 것이 아니라, 오하이오주와 일리노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할에는 반대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유타주에서는 이 소송에 관계없는 후임자에게 장관직을 양도했다. 다른 15개 주의 사법장관이 분할에 열성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나, 앞으로의 부시와 손을 잡을 5~7주는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고 비교적 상세하게 보고 있다. ●

(출처: Computopia)